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06

발의연월일: 2022. 9. 2.

발 의 자:조정식·김윤덕·김홍걸

김두관 · 김주영 · 박성준

이정문 • 민홍철 • 이학영

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그 중 화석연료와 전기에너지 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전기자동차 총 450만대를 누적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수소연료 공급시설이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기간 동안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취득세의 감면액 한도를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 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액의 한도를 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3호).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3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4 0만원"을 각각 "9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 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면) ①・② (생 략)	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③
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	
면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2021년 1월 1일부터 <u>2022년</u>	3 <u>2024</u>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u>년 12월 31일</u>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u>90만원</u>
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u>40</u>	<u>90</u> 만
<u>만원</u> 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u>원</u>
세액에서 <u>40만원</u> 을 공제한다.	<u>90만원</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